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북한정보공개센터를 신설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는 등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북한인권기록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류협력실,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3호의2 중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를 “확산을 위한 정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6.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7.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공감대 형성 및 홍보

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의 수립·시행

19. 국내외 통일 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제10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0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시행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9.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1.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2.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정 및 승인 등
18. 남북한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19.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2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획·조정 및 협력·지원
24.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를 및 실태조사·연구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제11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료의”를 “정보”로,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남북회담 및 접촉”을 “남북회담, 접촉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담운영부”를 “회담운영연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 및 대북교섭 전략의 수립·조정
3.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4.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8.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관리
9.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10.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3.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4.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17.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담운영연락부) ① 회담운영연락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4.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5.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등의 운영 지원
6.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7.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9.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0.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11.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12.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13.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제30조의4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남북출입시설 체험·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7장(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9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11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대

제하여”를 “소속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5조 중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한다.

제36조 중 “4개”를 “1개”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통일전략기획관) ① 통일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전략기획관을 둔다.

② 통일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전략기획관은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전략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단)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단을 둔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 · 구상 분야별 이행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 · 구상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 · 지원
4. 통일 미래전략 · 구상 추진에 대한 평가 · 점검
5. 통일 미래전략 · 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
6. 통일 미래전략 · 구상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7.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관계 부처 · 기관 및 국내외 협력
8.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9.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91”을 “309”로 하고, 일반직 계 “287”을 “3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12”로, 3급 또는 4급 이하 “271”을 “287”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47”을 “228”로 하고, 일반직 계 “247”을 “22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30”을 “213”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316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전략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으로 각각 본다.

[별표 3]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인권인도실장	0명
2)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0명
3) 인권인도실 2개 과	0명
4) 정세분석국 1개 팀	0명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1. 통일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통일미래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4급 이하	8

[별표 5]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제39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 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 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 소, 남북출입사무소, <u>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 북한인권기 록센터</u>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u>북한인권기 록센터</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 영지원과, 통일정책실, <u>교류협 력실,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u>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인권인도 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일정책실) ① · ② (생 략)	제10조(통일정책실)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통일문화의 <u>확산 및 기 반조성을 위한 정책 · 법령 · 제도의 수립 · 시행</u>	13의2. ----- <u>확산을 위한 정책 · 법령</u> ----- -----
13의3. · 14. (생 략)	13의3.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교류협력실) ① 교류협
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8. (생 략)

<신 설>

15.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
의 수립·종합 및 조정

16.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7.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공감대 형성 및 홍보

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 법령의 수립·시행

19. 국내외 통일 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에 관한 정책의 수
립·시행

제11조의3(교류협력국) ① 교류협
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 -----

-----.

③ 국장-----
--.

1. ~ 18.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 인권인
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시행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9.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1.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를 및 실태조사·연구

12. 이산가족 관련 접촉 · 왕래
의 기획 · 조정 및 승인
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 관
리 및 운영 지원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 상봉
· 서신교환 · 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
리 ·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
책 · 법령 · 제도의 수립 · 추진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
업의 기획 · 조정 및 승인 등
18. 남북한이 합의한 인도적 대
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
· 지원
19.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
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통
계 및 동향의 종합 · 분석
2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 · 조정 · 승
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 · 반입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에 관한 승인·조정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
 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
 · 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획·조정 및 협력·지
 원

24.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
 책 연구 및 조사 등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
 도의 입안·협약 및 실태조사
 ·연구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
 리계획의 수립·시행

2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
 소의 지도·감독

제11조(정세분석국) ① -----
 ----- 두고, 국장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설>

9. · 10. (생략)

제12조(인도협력국) ① 인도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 · 법령 · 제도의 수립 · 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 · 지원

3.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조정 및 지원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 · 분석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정보 -----
----- 수립 · 시행

8의2.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 10. (현행과 같음)

<삭제>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
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에 관한 승인·조정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
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
정·승인 등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및 관계 기관·단체 지
원·관리
10.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
한 정책 수립·총괄
11.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입안·시행
12.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
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
감독
14.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적 공감대 확산
15.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
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6.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
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7.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
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8.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
로 관련 법령 · 제도의 입안 ·
협의 및 실태조사 · 연구
19. 이산가족 관련 접촉 · 왕래
의 기획 · 조정 및 승인
20.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 관
리 및 운영 지원
21.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 상봉
· 서신교환 · 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2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
리 ·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조정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 · 제
도의 입안 · 협의 및 실태조사
· 연구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6.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의 수립에 관한 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담본부에 상근회담대

제14조(직무) -----

----- 남북회담, 접촉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

제16조(하부조직) ① -----
----- 회담운영연락부-----

-----.

<삭 제>

표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회담기획부) ①·② (생략)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

<삭 제>

제17조(회담기획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 및 대북교섭 전략의 수립·조정

3.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4.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8.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관리

9.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

의 기획 및 지원

북협상 지원

10.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
의 기획 및 지원

1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
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3.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4.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 회계 · 결산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조달 · 관리

17.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18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
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
행상황 관리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
보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 · 관리

제18조(회담운영연락부) ① 회담
운영연락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
보

<u>4.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u> <u>5.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u> <u>6.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 회계 · 결산</u> <u>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조달 · 관리</u> <u>8. 남북한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 · 조정</u> <u>9.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u> <u>10.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 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 조</u> <u>11.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u> <u>12.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u> <u>13.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 보안 및 통제</u> <u>14.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u> <u>15.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 망의 관리 · 운용</u>	<u>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 · 관리</u> <u>4.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 조정</u> <u>5.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등의 운영 지원</u> <u>6.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u> <u>7.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 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 조</u> <u>8.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u> <u>9.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u> <u>10.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 보안 및 통제</u> <u>11.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u> <u>12.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 망의 관리 · 운용</u> <u>13.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 · 운영</u>
제30조의4(직무) 남북출입사무소 (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제30조의4(직무) ----- ----- -----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제31조(직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남북한 간 상시적 연락·협의를
및 교류협력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

2. 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

3.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교육 및 인도지원 등 각
분야별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5. 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
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

-----.

1. ~ 12. (현행과 같음)

13. 남북출입시설 체험·견학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의 지원

6. 남북한 왕래에 대한 편의 보장 지원

7. 그 밖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제31조의2(사무처장)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삭 제>

<삭 제>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
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
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9명을, 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
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
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정원) ① -----

----- 정원(「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
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

② -----

---. -----

----- 30명-----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9명-----

-----.

⑤ 남북회담본부-----

----- 소속 공무원으로 -----

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
며,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
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대체
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
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
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8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①
장관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둔다.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
----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1개 -----

-----.

제38조(통일전략기획관) ① 통일
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통일전략기획관을

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대북 협의의 기획·지원

3. 통일 미래전략·구상에 대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4.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국내외 협력

5.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공감대 형성 및 홍보

④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

둔다.

② 통일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전략기획관은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전략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단)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단을 둔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이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지원
4. 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대한 평가·점검
5.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
6. 통일 미래전략·구상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신 설> 대통령령 제3316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7.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국내외 협력</u> 8.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u> 9.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u> ④ <u>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u> ⑤ <u>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u> 제39조(한시정원) <u>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u> 대통령령 제3316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	---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 9명 중 2명(5급 1명, 7급 1
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 공
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
명)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
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으로 각각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1</u>	<u>309</u>	+18
•	•	•	
•	•	•	
일반직 계	<u>287</u>	<u>305</u>	+18
고위공무원단	<u>10</u>	<u>12</u>	+2
3급 또는 4급 이하	<u>271</u>	<u>287</u>	+16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47</u>	<u>228</u>	-19
일반직 계	<u>247</u>	<u>228</u>	-19
고위공무원단	<u>8</u>	<u>6</u>	-2
3급 또는 4급 이하	<u>230</u>	<u>213</u>	-17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